

시민의 눈과 마음으로 함께하는 열린 의회

제114회 창원시의회 (임시회)

제1차 기획행정위원회('22. 04. 14.)

창원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

창원시의회
(기획행정위원회)

창원시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22. 04. 14.(목)
기획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2. 04. 08. 창원시장

나. 회 부 일 자 : 2022. 04. 08.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제114회 임시회 제1차(2022. 04. 14.)

기획행정위원회 상정·의결(의안번호 제1012호)

2. 제안설명 요지 (제안 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서정국)

가. 제안이유

- 소방 현장부족 인력 충원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기구의 존속 기한 연장에 따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변경하려는 것임

나. 주요내용

- 총 정원 변동(안 제2조): 5,189명 → 5,250명(증 61명)

1) 일반직공무원 정원 : 4,122명(변동없음)

2) 소방기구의 소방직공무원 정원: 1,067명 → 1,128명(증 61명)

○ 직급별 정원 조정(안 별표 3)

구분	계	일 반 직							소 방 직				정무직 별정직 연구직 지도직
		2급	3·4급	4급	4·5급	5급	6급 이하	전문경력관	소방준감·소방정	소방정	소방령	소방경 이하	
현행	5,189	2	7	19	8	207	3,819	3	1	3	16	1,047	57
조정	5,250	2	7	19	8	207	3,819	3	1	3	16	1,108	57
증감	증61	-	-	-	-	-	-	-	-	-	-	증61	-

○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(안 별표 4)

- 스마트혁신산업국(4급): 2022년 6월 30일 → 2025년 6월 30일

다. 참고사항

○ 관계 법령

- 1) 「지방자치법」 제125조
- 2)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30조

○ 예산조치: 예산담당관 합의 완료(인건비 3,665,390천원 증액)

○ 합 의: 해당사항 없음

○ 기 타

- 1) 신·구조문대비표: 붙임
- 2) 신·구별표대비표: 붙임
- 3) 입법예고(2022. 3. 22.~ 3. 25.) 결과: 제출 의견 없음
- 4) 규제심사: 해당사항 없음
- 5) 성별영향평가 결과: 개선사항 없음
- 6) 비용추계서

① 추계의 전제: 직급별 평균호봉 기준으로 비용 추계

○ 한시정원 존속기한 연장(안 별표 4)

- 스마트혁신산업국(4급) : 2022년 6월 30일 → 2025년 6월 30일

□ 종합의견

○ 소방 현장부족 인력 충원을 위하여 정원을 조정하고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연장에 따라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변경하려는 것으로

○ 정부의 소방공무원 현장부족인력 2만명 충원계획에 따른 2022년 기준 인건비 산정에 따라 화재진압대·구급대·상황실 등 현장부족인력을 보강하고, 대응총괄인력 등 현안 수요인력을 증원하여 시민안전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

<기관별 조정내역 현황>

(단위:명)

구 분	현 행	조정안	증감	비고
정원의 총수	5,189	5,250	증61	
집행기관의 정원	4,061	4,061	-	
소방기구의 소방공무원 정원	1,067	1,128	증61	
의회사무기구의 정원	61	61	-	

<조정 후 정원분포 현황>

(단위:명)

구 분	합계	소방준감 소방정	소방령	소방경	소방위	소방장	소방교	소방사
산정인원(A)	1,067	4	16	79	92	171	249	456
조정인원(B)	1,128	4	16	79	95	181	270	483
대 비(B-A)	61	-	-	-	3	10	21	27

4. 질의·답변 요지 : 기재 생략

5. 토론 요지 : 기재 생략

6. 심사 결과 : **원안 가결**

7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(부대의견, 건의 사항, 촉구사항 등) : 없음